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희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518

발의연월일: 2024. 8. 2.

발 의 자:정희용·엄태영·김미애

김종양・강승규・김선교

배현진 · 조승환 · 최은석

신성범 · 김도읍 · 임이자

정점식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식품지원 정책의 하나로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.

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국내산 채소, 과일, 육류 등을 전자바우처 및 온라인 주문을 이용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.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영양개선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법률에 사업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안정적·지 속적 운영 및 경제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'농식품이용권'으로 정의함(안 제3조 제8호의2 신설).
- 나.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소득층 등 농식품이용에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3조의3 신설).
- 다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및 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3조의4 신설).

법률 제 호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의2. "농식품이용권"이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(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)된 증표를 말한다.

제23조의3 및 제23조의4를 각각 제23조의5 및 제23조의6으로 하고,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3조의3(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저소득층 등 농식품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농 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·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 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

- 의 확인을 위하여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 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④ 그 밖에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- 제23조의4(전담기관의 지정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이용 권의 지급 및 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식 품이용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(이하 "전담기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- 2.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 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 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 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·절차,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3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8의2. "농식품이용권"이란 저소
	득층 등 취약계층이 식품을
	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
	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(전자
	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
	기록을 포함한다)된 증표를
	<u>말한다.</u>
9. (생 략)	9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23조의3(농식품이용권의 지급
	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
	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소득층
	등 농식품 이용에서 소외되기
	쉬운 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
	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
	을 갖춘 사람에게 농식품이용
	권을 지급할 수 있다.
	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
	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
	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족
	관계증명·국세 및 지방세 등

<신 설>

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당사자의 동의 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 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야 한다.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「사회 보장기본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 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① 그 밖에 농식품이용권의 지 급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3조의4(전담기관의 지정 등)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및 운영 등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(이하 "전담기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하여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수행하게할수있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

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 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 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 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 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 다.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 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 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• 절차, 운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
제23조의3(지역먹거리계획의 수 | 제23조의5(지역먹거리계획의 수 립ㆍ시행) (현행 제23조의3과

립 · 시행) (생 략)

제23조의4(농산물 및 식품에 대 제23조의6(농산물 및 식품에 대 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) (생 략)

같음)

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) (현행 제23조의4와 같음)